

# 2025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공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25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한 국 소 방 안 전 원 장

##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일정

### ○ 시험일정 등

구 분		원서접수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특급	22회	1차	5.7.(수) ~ 5.13.(화)	5.24.(토), 9:00	5.30.(금), 10:00
		2차	6.11.(수) ~ 6.17.(화)	6.29.(일), 9:00	8.8.(금), 10:00
	23회	1차	9.3.(수) ~ 9.9.(화)	9.21.(일), 9:00	9.26.(금), 10:00
		2차	10.15.(수) ~ 10.21.(화)	11.1.(토), 9:00	12.12.(금), 10:00

※ 상기 시험일정은 국가기술자격(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 국가전문자격(소방시설관리사 등)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단,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함

### ○ 시험장소

구 분	시험장소
특급	1차 시험 7개 시·도지부 교육장 또는 지정 장소 (서울, 서울동부, 부산, 대구경북, 인천, 대전충남, 경기지부)
	2차 시험 6개 시·도지부 교육장 또는 지정 장소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대전충남, 경기지부)

※ 상기 시험장소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함

## 2

##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일정

## ○ 시험일정 등

- 시·도지부별 1·2·3급 자격시험 일정 일괄 공고 및 동시접수 실시  
(공고일 : 매월 말일 / 접수일 : 매월 셋째주 목요일)

※ 공고일 및 접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평일)에 공고 및 접수 실시

시험일정	공고일정 ※ 공고시간 : 10시	접수일정 ※ 접수시간 : 1·3급(10시), 2급(14시)
'25년 1월 시험	'24.12.06.(금)	'24.12.19.(목)
2월 시험	'24.12.31.(화)	'25.01.16.(목)
3월 시험	'25.01.31.(금)	'25.02.13.(목)
4월 시험	'25.02.28.(금)	'25.03.13.(목)
5월 시험	'25.03.31.(월)	'25.04.17.(목)
6월 시험	'25.04.30.(수)	'25.05.15.(목)
7월 시험	'25.05.30.(금)	'25.06.19.(목)
8월 시험	'25.06.30.(월)	'25.07.17.(목)
9월 시험	'25.07.31.(목)	'25.08.14.(목)
10월 시험	'25.08.29.(금)	'25.09.18.(목)
11월 시험	'25.09.30.(화)	'25.10.16.(목)
12월 시험	'25.10.31.(금)	'25.11.13.(목)
'26년 1월 시험	'25.12.05.(금)	'25.12.18.(목)

※ 시험운영 사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험일정 등의 시험공고 및 접수일정은 다를 수 있으며, 세부시험 일정은 홈페이지(시험신청 → 시험일정)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시험장소 : 한국소방안전원 15개 시·도지부 교육장 또는 지정 장소

종목	응시자격
특급	<p>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p> <p>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li> <li>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li> <li>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li> </ol> <p>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p> <p>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 참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b>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시험응시일 이전까지 해당 서류 제출</li> </ul>

종목	응시자격
1급	<p>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li> <li>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li> <li>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li> </ol> <p>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p> <p>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p> <p>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p> <p>※ 참고 사항</p> <p>-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p> <p><b>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b></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div>

<b>종목</b>	<b>응 시 자 격</b>
-----------	----------------

2급

-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파.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하.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참고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목	응시자격
3급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강습교육 및 응시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안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 응시원서 접수방법

### ○ 접수방법

구 분	시험 접수방법	
강습교육 수료자 또는 재시험 접수 희망자	별도의 "응시자격심사" 절차 없이 시험접수 가능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가능)	
학력, 경력, 자격 등의 응시자격으로 최초 시험접수 희망자	방문 접수	응시자격(증빙서류) 심사 후 시험접수 진행 ※ 단, 접수예정 또는 마감된 시험일정에는 접수할 수 없음
	인터넷 접수	① "응시자격심사" 신청(증빙서류 첨부) ② "응시자격심사" 승인 이후 시험접수 가능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 시험접수는 선착순 접수이므로 접수예정 또는 마감된 시험일정에는 접수할 수 없음

※ 방문접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일(09:00~18:00)만 가능

## 5

## 응시자 제출서류 등

## ○ 기본 제출서류

1. 시험응시원서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2. 증명사진(3.5cm × 4.5cm)
3.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4. 응시자격 증명서류 \* 세부내용 : [별첨] 참조

※ 3, 4는 학력, 경력, 자격 등의 응시자격으로 최초 시험접수를 하는 경우에 한함

## ○ 응시수수료

- (특 급) 제1차 18,000원, 제2차 24,000원
- (1·2·3급) 12,000원

## 6

## 시험문항 및 시험시간

시험과정		문항수	문제형식	시험시간
특급	제1차	100문제	객관식(4지1선택형)	120분
	제2차	20문제	주관식(서술형, 계산형 등)	90분
1·2·3급		50문제	객관식(4지1선택형)	60분

종 목		시험과목	
		제1과목	제2과목
특급	제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안전관리자 제도</li> <li>화재통계 및 피해분석</li> <li>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안전관리</li> <li>직업윤리 및 리더십</li> <li>소방관계법령</li> <li>건축·전기·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li> <li>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li> <li>초고층재난관리법령</li> <li>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기초이론</li> <li>연소·방화·방폭공학</li> <li>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li> <li>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li> <li>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li> <li>종합방재실 운용</li> <li>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li> <li>화재원인 조사실무</li> <li>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li> <li>피난안전구역 운영</li> <li>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li> <li>화재피해 복구</li> </ul>
	제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li> <li>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li> <li>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li> <li>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li> <li>자체점검서식의 작성 실습·평가</li> <li>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li> <li>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li> <li>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li> <li>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li> <li>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li> <li>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li> </ul>

종목	시험과목	
	제1과목	제2과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안전관리자 제도</li> <li>소방관계법령</li> <li>건축관계법령</li> <li>소방학개론</li> <li>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li> <li>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li> <li>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li> <li>종합방재실 운영</li> <li>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li> <li>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li> <li>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li> <li>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li> <li>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li> <li>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li> <li>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li> <li>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li> <li>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li> <li>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li> </ul>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안전관리자 제도</li> <li>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li> <li>소방학개론</li> <li>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li> <li>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li> <li>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li> <li>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li> <li>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실습·평가</li> <li>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li> <li>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li> <li>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li> <li>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li> <li>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li> <li>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li> <li>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li> </ul>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관계법령</li> <li>화재일반</li> <li>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li> <li>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li> <li>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실습·평가</li> <li>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li> <li>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li> <li>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li> <li>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li> <li>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li> </ul>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8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합격자 발표 :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60일)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도지부 게시판 등

## 9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의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 및 지역은 자격별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시험일정,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http://www.kfsi.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께서는 자격별 시험안내문에 게시된 응시자격, 시험과목,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응시자에게 사전 고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질서유지와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도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899-4819(콜센터)

※ 운영시간 : 평일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시·도지부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서울지부	02) 850-1378	경기지부	031) 257-0131
서울동부지부	02) 850-1392	경기북부지부	031) 945-3118
부산지부	051) 553-8423	강원지부	033) 345-2119
대구경북지부	053) 431-2393	충북지부	043) 237-3119
인천지부	032) 569-1971	전북지부	063) 212-8315
광주전남지부	062) 942-6679	경남지부	055) 237-2071
대전충남지부	042) 638-4119	제주지부	064) 758-8047
울산지부	052) 256-9011	-	-